



목 차

서문 ..... 3

윤리헌장 ..... 4

실천규범 ..... 5

1. 임직원 윤리 ..... 5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 6

3. 고객가치 실현 ..... 7

4. 임직원 존중 ..... 8

5. 지속가능성 추구 ..... 9

경영시스템 ..... 10

부칙 ..... 13

## 서문

### 1. 제정목적

대주코레스는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대주코레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다. 대주코레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적용범위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대주코레스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를 포함하며, 대주코레스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대주코레스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대주코레스 5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 [실천규범]

### 1.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 □ 뇌물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sup>1</sup>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 □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 □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sup>2</sup>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1)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2) 내부자 거래에는 흔히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 반독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 □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조달**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고객가치 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고객 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품질**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보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 4. 임직원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지속가능성 추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 □사회공헌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책임있는 구매

우리는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에 대한 원산지과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에 노력하며,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생산된(근로자의 노동인권 존중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수출제한 준수

우리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 위조부품 방지**

우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 [경영시스템]

###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 □조직 및 보고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모니터링 및 실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내부통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내부 고발자 보호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개정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 □교육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처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징계기준

본 규정 위반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다.

## □민감한 거래 승인 절차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의 수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금품,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본 행동강령 기준 민감한 거래 발생시 다음 별도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처리한다.

-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선물 및 향응 등:

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빈도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 3만원 이상의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나. 1회 1인당 5만원 이상의 물품 및 제품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다. 금전, 유가증권, 회원권, 상품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제공

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마.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국내외 출장비 및 그에 준하는 것

바. 골프, 유흥업소 등의 접대, 향응

사. 단,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제품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금전 또는 경품 및 그에 준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로 인정한다.

- 금품 및 선물 등의 반환: 이를 수수한 자는 반환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반환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처리하고,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반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며,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이를 신고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회사의 규정 또는 조리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향응, 편의 등: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는 해당 향응, 편의 등에 소요된 가액을 회사경비로 지출 또는 반환 처리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때에는는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개인비용으로 지출 또는 반환처리하고, 그 임직원은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위반 정보공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기록

기록명	최소보관기간	기록매체	보관책임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영구	하드카피	작성부서장, 주관부서장